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노건엽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

요약

-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함
-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2021년 6월에 도입하였으나,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맞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일본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 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임
 -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은 사업 규모, 보험금, 보험기간, 자산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와 경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의 등장과 IT기술 혁신으로 인해 진입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있음
-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로 보임
 -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인적요건, 자본금 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보험산업은 대면채널 중심의 영업과 복잡한 상품으로 인해 판매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부진하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김재현·이석호(2021)는 보험산업이 대면채널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함¹⁾
 - 2020년 기준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은 개인생명보험 1.2%, 장기손해보험 8.0%로 자동차보험(43.2%)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임²⁾
 - 2021년 상반기 보험민원 중 판매와 관련된 민원(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은 생명보험 58.5%, 손해보험 18.7%를 차지함³⁾
- 기존 보험회사의 경우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품 혁신 및 판매의 디지털화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함
 - 김재현·이석호(2021)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보험회사가 상품이나 판매채널 다변화 전략을 수행할 때 항상 염려하는 것이 기존 설계사 조직과의 마찰임
-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2021년 6월에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함⁴⁾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됨
 - 자본금이 완화되는 대신 일부 보험종목은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 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됨
 -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유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가능함
- 하지만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금융당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⁵⁾ 소액 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김재현·이석호(202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보험산업-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2)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8. 19),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5) 대한금융신문(2021. 12. 15), “문턱 낮춰도 소액단기보험사 인가 신청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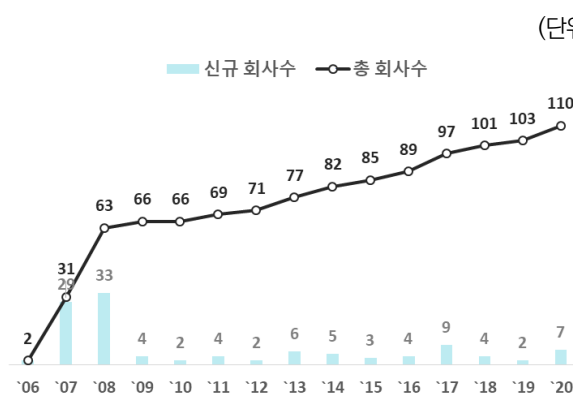
- 본고는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일본 소액단기 보험업 활성화의 제도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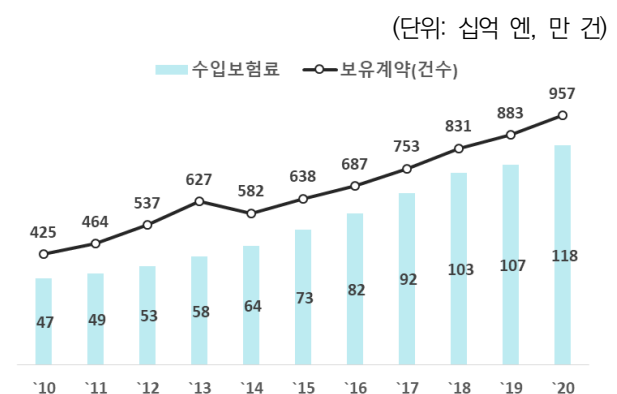
- 일본의 소액단기 보험업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던 무인가 공제(근거법이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대상으로 삼아 규제·감독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되었음⁶⁾
 - 비록 소액단기 보험업을 도입한 취지가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제도 도입 이후 소액단기보험회사가 규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10개사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 성장함
 -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기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혼상제, 의료, 요양(개호), 여행, IT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의해 매년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합병되거나 손해보험회사로 발전함
 - 모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장수요에 대응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가입부터 보상까지 간편하게 앱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도 등장함
 - 고독사 보험,⁷⁾ 집단 따돌림 문제 발생 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변호사 중개 서비스도 제공), AI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스마트폰 수리비용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등장함⁸⁾

〈그림 1〉 일본 소액단기보험 회사 수 추이



자료: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결산현황”

〈그림 2〉 일본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추이



자료: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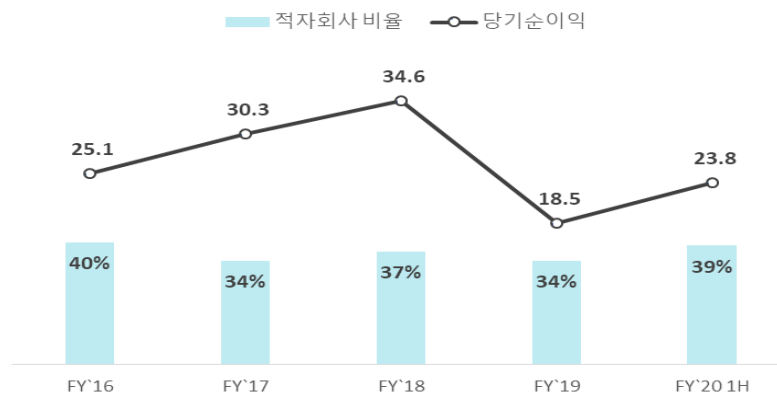
6) 류성경(2021),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전략에 관한 연구-상품 및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7) 입주자의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청소 및 수리 등 원상회복비용, 수리기간 동안 임대료 보상 등)을 보장함
 8) 熊沢由弘(2019), “少額短期保険の動向 一成長と多様化-”, 共済総合研究, 第79号

○ 수익성 측면에서는 40% 가량의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적자 상태이며, 이는 영업기간이 짧고 매출액이 적은 회사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회사 설립 이후 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최근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가재보험⁹⁾과 펫보험의 손해를 상승에 기인함

〈그림 3〉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및 적자회사 비율

(단위: 억 엔)



자료: 일본 금융청(2021. 9), “2021년 보험 모니터링 보고서”

○ 일본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임(〈부록〉 참조)

- (진입 규제)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최저자본금이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1/100 수준인 1,000만 엔이며 인허가제도도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함
- (상품 심사) 종합보험회사는 상품을 인가받아야 되는 반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사전신고만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함
- (외부 감사) 종합보험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자본금이 3억 엔 이상일 때만 외부 감사가 의무화됨
- (지급여력규제)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함
 - RBC 요구자본 대상 중 보험위험, 자산운용위험(가격변동, 신용위험 등), 경영관리위험은 측정¹⁰⁾하나 예정이율위험, 최저보증위험은 제외됨
- (계약자보호제도)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함

9) 가재(家財)보험은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구의 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임

10)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1조의 60을 참고함

-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은 사업 규모, 보험금, 보험기간, 자산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와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연간 보험료는 50억 엔 이하이며 보험금은 종목별로 80만 엔에서 1,000만 엔까지 제한을 두며 보험기간도 최대 2년만 허용됨
 - 또한, 자산은 예금,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함
 - 금융당국은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업무 적절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논의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함
- 한편,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의 등장과 IT기술 혁신으로 인해 진입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있음¹¹⁾
 - 일부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회사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기술 혁신에 의해 계약가입이 앱이나 웹에서 가능하게 되어 대면 판매채널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진입이 용이해짐



3. 우리나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보험회사의 진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소비자, 기존 보험회사,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로 보임
 -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함

11) 熊沢由弘(2019), “少額短期保険の動向 —成長と多様化—”, 共済総合研究, 第79号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급여력제도)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하여 K-ICS의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유럽 Solvency II 방식의 비례성 원칙¹²⁾을 적용하여 K-ICS 적용을 면제하고 RBC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 (계약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기구 가입 대신 보증금 공탁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적요건)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만기가 짧은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인적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음
 - (자본금) 시행령에 제시된 20억 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업법에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산은 예금, 국채,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12) 비례성 원칙은 공정한 규제 체제 속에서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가 시장 내에서 공존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연간 수입보험료가 5백만 유로 이하 또는 책임준비금이 25백만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유럽의 소규모 보험회사는 Solvency II를 적용하지 않고 Solvency I을 적용할 수 있음

부록.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와 종합보험회사의 규제 차이 비교

구분	소액단기보험회사	종합보험회사
감독관청	• 금융청	• 금융청
회사 형태	• 주식회사, 상호회사	• 주식회사, 상호회사
인허가 제도	• 재무국에 의한 등록제	• 금융청에 의한 면허제
최저자본금	• 1,000만 엔	• 10억 엔
겸영 여부	• 생·손보 겸영 가능	• 겸영 금지
상품 심사	• 사전신고제	• 개인상품은 인가제
사업 규모	• 연간 보험료 50억 엔 이하	• 제한 없음
보험금 제한	• 사망보험: 300만 엔 이하 • 상해사망: 600만 엔 이하 • 의료보험: 80만 엔 이하 • 손해보험: 1,000만 엔 이하	• 제한 없음
보험기간	• 생명보험 1년, 손해보험 2년	• 제한 없음
모집방법	• 소액단기모집인을 통한 모집	• 제한 없음
자산운용	• 안전자산 한정(예금, 국채, 지방채 등)	• 제한 없음
외부 감사	• 자본금 3억 엔 이상	• 필요
감독	• 지급여력비율 규제(일부 위험만 측정)	• 지급여력비율 규제
계약자보호	• 영업 보증금(전년도 수입보험료의 5% + 1000만 엔) 공탁	• 계약자 보호기구 가입
기타	• 보험회사, 보험지주회사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할 수 있음 • 소액단기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홈페이지